

69.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2년 9월 19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정책지원국장 배호기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정책보좌기능 강화 및 교육감 일정관리, 민원처리 등 비서실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비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함

-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(안 별표3)
 -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: 2,578 → 2,577(감 1명)
 -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: 2 → 3(증 1명)

3. 검토보고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비서실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비서실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활용하여 별정직 7급 상당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▶ 안 별표3에서,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“2,578명” 에서 “2,577명” 으로 1명 감원하며,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정원을 “2명” 에서 “3명” 으로 1명 증원함

【정원 조정 내역】

직종별	변경 전		변경 후		비고
	직급별	인원	직급별	인원	
일반직	5급 이하	2,578	5급 이하	<u>2,577</u>	
별정직	5급 상당 이하	2	5급 상당 이하	<u>3</u>	비서관·비서

- 검토 결과
 - ▶ 본 개정조례안은, 제11대 교육감 취임에 따른 공약사항 및 각종 정책 추진과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,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등 교육감의 정무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,

- ▶ 현재 지방공무원의 별정직 책정 기준은 0.3%⁵⁰⁾이내(최대 8명)이며, 별정직 공무원 1명의 증원은 총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없이 비서실 일반직 6급 정원에서 조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음
- ▶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지정하는 공무원으로,
- ▶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음

50)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별표1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